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25호

나. 발 의 자 : 김경 의원 외 15명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’를 두도록 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기존에 설치·운영 중인 ‘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’에 심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2020. 12. 개정된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은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의 변화,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의 증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하도록 상향하였고, ‘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’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이는 정책 수립·평가 과정에서 문화 관련 기관, 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,

서울시의 경우 또한 대한민국 수도로서 가치지향적이었던 과거 문화정책의 틀에서 벗어나, 차별 없는 문화적 권리 향유를 위하여 보편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.¹⁾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의 입법기술적·내용적

1)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(2021, 서울문화재단)

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.

다.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사항의 추가(안 제15조)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”) 제6조의2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)에 시·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(이하 “시·도 협력위원회”)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- 현행 조례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 조례로서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현행 서울시 조례 중 시·도 협력위원회를 규정한 사례가 없는바 해당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
 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시 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」(조직담당관)은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 중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경우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② ..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.

1.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
2.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

- 위원회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현행 조례는 관련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고 있음.

- 시의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-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,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
- 시민제안사업 검토
- 문화원탁회의,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, 문화예술진흥,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이와 비교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·도 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

-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-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,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·도 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위원회가 서울시 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의안번호
2425

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김경 의원	2025.2.3.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〈개정 필요성〉 ○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함(안 제15조)				
추진경과	○ '25. 2. 3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				
부 서 검토의견	○ 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임 ○ 법령에 따라 설치가 규정된 시·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며,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도 우리시 문화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역할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				
대응방안	○ 이견 없음	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		
향 후 계 획			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	팀장	이남재(☎2133-2512)	담당	김근형(☎2133-2516)